고용노동부	보도설명자료	한국판뉴딜	
배포일시	2021. 10. 15.(금) / 총 2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	과 장 최태호 사무관 송형기	044-202-7327 044-202-7335
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워크넷 구인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1. 주요 기사 내용

□ 10.15.(금) 국민일보 “지자체 연결 일자리라 믿었는데…악덕업체 소개한 거냐”

- ㅇ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등 공적 일자리망이 임금 체불이나 근로계약 위반을 저지르는 악덕업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.
- ㅇ 채용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검증한다지만 ‘5인 미만 사업장’으로 직원 수를 속여 근로기준법을 피해 가는 등 구직자를 우롱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.

2. 설명내용

□ 현재 사업장에서 워크넷 구인을 신청하면, 유선 등을 통해 **모든 구인신청 건**에 대해 **구인신청 내용**을 **확인**하여 **인증**하고 있음

ㅇ 이때, **구인정보**가 **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, 성·연령차별 등 구인내용에 법령위반은 없는지, 근로조건은 적정*한지, 구인자가 체불사업주**(명단 공표 사업장)**인지 등**을 **확인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**하거나 **정정 후 인증**하고 있음

*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·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지 여부 확인

※ 근거법령: 직업안정법 제8조(구인의 신청)

ㅇ **구인신청 인증 이후**에도 **매일 상시적**으로 **전날 구인신청 인증된 건**의 **50%**를 **한국고용정보원**에서 **추가 모니터링**하고 있음

□ **향후** 구직자들에게 보다 **신뢰성 높은 구인정보**를 **제공**할 수 있도록 **구인인증 및 모니터링 과정**에서 상시근로자수, 직무수행내용 등을 **보다 면밀히 확인**하겠음

□ 아울러, **면접절차나 근로계약 체결 과정**에서 **구인자가 제시한 근로조건** 등이 **워크넷에 등록된 구인정보와 현저히 다른 경우**에는 **거짓 구인광고로 처벌이 가능**함

※ 근거법령: 직업안정법 제47조(벌칙) 및 제34조(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)

ㅇ 현재 **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워크넷**을 통해 **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신고**를 받고 있음

ㅇ 또한, 거짓 구인광고 신고 건이 행정처분이나 기소가 될 경우 **포상금**을 **지급**하는 **신고포상금 제도**도 운영하고 있는바, 향후 **거짓 구인광고 신고 및 포상금 제도**에 대한 **홍보·안내**를 **강화**하는 등 **사후관리에도 만전**을 기하겠음

※ 근거법령: 직업안정법 제45조의3(포상금)